
1381 해외인증자료



작성일자 2025.03.07. 기준,
무단 도용 배포 금지

(문의)

말레이시아에 플라스틱 원부자재 수출시 규제사항 문의드립니다.

아래에는 해외 원문 문서를 번역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1381인증·표준정보센터는 원칙적으로 해외원문 문서의 번역서비스를 하지 않으며, 간혹 경우에 따라 일부 내용을 번역할 경우에도 그 번역의 완전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서 번역은 업체의 몫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문서 내 링크 또는 문서 하단 ※ 자료 출처의 링크를 통해 원문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품에 해당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제품 사양을 근거로 업체에서 직접 판단하시거나 관련 기관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1381인증·표준정보센터는 국내/해외의 법률적 유권해석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

개 요

▶ 화학물질 규제 특성

참고로, 대부분 화학물질 규제는 인증이 아니라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개념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자는 제품의 안전한 취급, 운송을 위해 성분분석 테스트를 통해 시험성적서, SDS (safety data sheet) 등을 구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말레이시아 화학물질 규제

말레이시아에서는 환경유해화학물질의 신고 및 등록제도(EHSNR)와 유해화학물질목록 신고제도(CLASS regulations) 2가지 법령에 따라서 화학물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유해화학물질목록 신고제도(CLASS regulations)의 경우 말레이시아 산업 안전 보건부(DOSH) 관할로 산업, 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신고, 라벨링 하는 제도입니다.

말레이시아의 화학물질 관련 규제

말레이시아의 화학물질 관리 제도는 "EHSNR(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s Notification and Registration: 환경 유해물질 신고 및 등록)"이라고 하며 2009년에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어 2011년에 강제 프로그램으로 변환되었습니다. 신고 대상자는 관련 정보를 말레이시아 환경부(DOE: Department of Environment)에 제출해야 합니다.

- EHSNR 홈페이지: <https://myehs.doe.gov.my/portal/myehs/>

환경유해물질 EHS는 EHS Reference List에 포함되어 있으며, List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GHS 분류 제도(classification scheme)에 따라 유해 카테고리(hazard category)로 지정됩니다.

- EHS Reference List: https://myehs.doe.gov.my/myehs/ehs_references_public/view

- EHS 제출 주체: 말레이시아 내 EHS 제조업자 또는 말레이시아 내 EHS 수입자
- EHS 제출 적용 범위: 연간 말레이시아 내 수입량이 1톤 이상일 경우 (2017년부터는 0.1톤 이상)

따라서 수출자는 해당 정보만 말레이시아 현지의 수입업자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비(非) 말레이시아 수출자는 현지의 수입업자 대신 제3자 대리인(third party representatives: TPR)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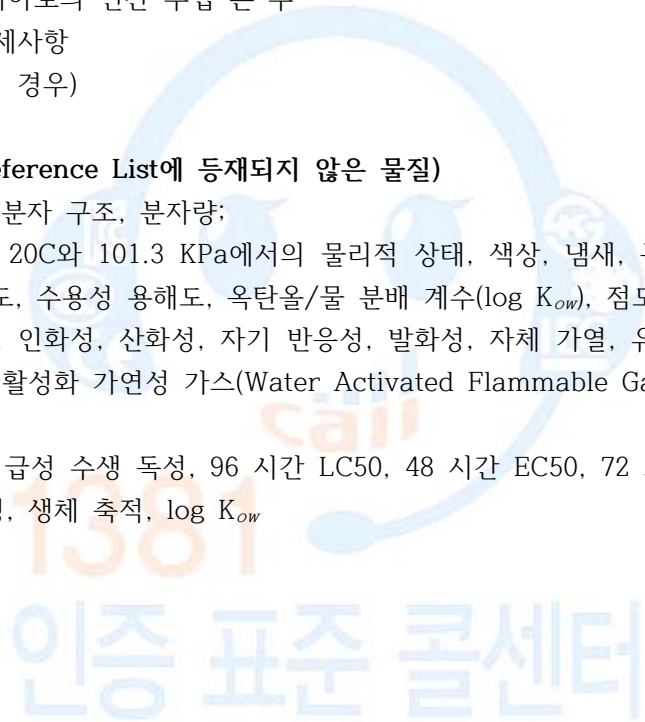
+EHS 제공 정보:

- 기본 신고 정보(EHS Reference List에 등재된 물질)

- 물질 확인(구분 정보: CAS 번호, EC 번호 또는 Code 번호)
- 신고 연도
- EHS의 존재: 물질 또는 혼합물 또는 완제품의 구성 성분으로 존재하는 물질
- 농도 범위: 주어진 EHS의 농도 범위는 최소 및 최대 농도 즉 원재료 또는 완제품에서의 해당 물질의 농도 간격(concentration interval)으로 정의됩니다.
- 해당 물질의 말레이시아로의 연간 수입 톤 수
- EHS 용도에 대한 상세사항
- 수출 국가명(수입품의 경우)

- 상세 신고 정보(EHS Reference List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

- EHS 확인: 분자 수식, 분자 구조, 분자량;
- 물리적, 화학적 특성 : 20C와 101.3 KPa에서의 물리적 상태, 색상, 냄새, 녹는점, 끓는점, 인화점, 자연 발화 온도, 증기압, 밀도, 수용성 용해도, 옥탄올/물 분배 계수(log K_{ow}), 점도
- 물리적 위험성: 폭발성, 인화성, 산화성, 자기 반응성, 발화성, 자체 가열, 유기 과산화물, 금속에의 부식성, 압력 하의 가스, 물 활성화 가연성 가스(Water Activated Flammable Gases)
- 인간 건강에의 위험성;
- 수생 환경에의 위험성: 급성 수생 독성, 96 시간 LC50, 48 시간 EC50, 72 또는 96 시간 ErC50, 만성 수생 독성, 준비 생분해 성, 생체 축적, log K_{ow}



※ 참고 자료

- CIRS > Malaysia EHSNR

<https://www.cirs-group.com/en/chemicals/malaysia-ehsnr>

- CIRS > Malaysia 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s Notification and Registration Scheme (EHSNR)

<https://www.cirs-group.com/en/chemicals/malaysia-environmentally-hazardous-substances-notification-and-registration-scheme-ehsnr>

- CIRS > Chemical Notification Types in Malaysia

http://www.cirs-reach.com/Malaysia/EHS_Notification_in_Malaysia.pdf

- 안전성평가솔루션(주) > [동향보고] 말레이시아, 화학물질 인벤토리 요약본 공개말레이시아, 화학물질 인벤토리 요약본 공개

http://www.safety-as.com/bbs/board.php?bo_table=briefing&wr_id=328

- Chemicalwatch > Malaysia's CLASS regulations published

<https://chemicalwatch.com/16800/malaysias-class-regulations-published>

- Export.gov > Malaysia Trade Barriers, Regulations, and Standards

https://2016.export.gov/malaysia/doingbusinessinmalaysia/eg_my_072633.asp

- 말레이시아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Safety Data Sheet of Hazardous Chemicals)

<https://www.dosh.gov.my/>



말레이시아에서 육류 제품 또는 육류 포함 제품이 아닌 한 할랄 인증이 국가 강제 규제는 아니지만, 말레이시아는 인구의 60% 이상이 무슬림이므로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할랄 인증 취득을 고려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할랄이란?

할랄은 이슬람법에 따라 허용되는 것(먹을 수 있거나 또는 사용 가능한 것)을 뜻하며, 이슬람교도들은 율법에 따라 돼지고기, 개고기, 술, 마약류, 민물고기, 포식조류, 뱀, 혈액과 그 부산물, 장기와 그 부산물 등을 넣은 제품을 먹지 않는데 할랄(Halal) 인증은 바로 그러한 이슬람의 규정을 따르는 제품에 대한 인증입니다. 보통 육류에서는 이슬람 규율에 따라 도축된 (주로) 염소고기, 닭고기, 쇠고기 등의 고기를 뜻하며, 금지 원료(돼지, 알코올 등)를 쓰지 않고 허용된 원료로만 만들어진 식품 및 화장품에도 해당됩니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최초로 의약품에 대해서도 할랄 인증을 실시하기도 하며,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는 여행상품이나 금융상품에도 할랄 개념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돼지고기 및 알코올 등의 금지 성분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것을 모든 원료, 성분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2. 할랄 인증

말레이시아의 할랄 인증 관련 내용(일반 사항, 기간 및 비용, 제출 서류 및 인증 요건 등등)은 해외인증정보시스템 내 말레이시아 할랄인증 페이지 <http://www.certinfo.kr/viewCert.do?certNo=195> 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랄 인증 취득절차

- ① 서류 승인
- ② 부지 검사/심사(Premise Inspection/Audit)
- ③ 보고서 작성
- ④ 패널 위원회(Panel committee) 검토
- ⑤ 할랄 인증서 발급
- ⑥ 감시 및 시행

3. 국내의 할랄 시험/인증기관

-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 <http://www.koreaislam.org/>
할랄위원회 담당자: 전희정 TEL: 02-793-6908 (내선 3) / FAX: 02-798-9782
- 한국중앙인증원(KJC) <http://www.kjc21.or.kr/> 02-780-8063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1577-0091, www.ktr.or.kr
<http://www.ktr.or.kr/certification/contentsid/1813/index.do>

참고로, 우리나라의 KMF를 통해 취득한 할랄 인증은 말레이시아 할랄인증 기구 JAKIM으로부터 동등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모든 수입 식품 및 상품들은 말레이시아 JAKIM 할랄인증이거나 혹은 JAKIM에서 인정을 받은 할랄인증인 경우에만 자체 할랄마크를 표시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할랄상품으로 표기하거나 마크를 표기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 할랄인증만이 이 지위

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밖의 한국계 할랄인증들은 말레이시아로 수출 시 자체 할랄마크를 표시하거나 할랄상품이라는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4. 말레이시아에서의 할랄 인증 절차

국내에서 KMF를 통해 받으신 할랄 인증서는 말레이시아에서 통용되지만, 참고를 위해 말레이시아 기관을 통한 할랄 인증 방법도 기재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KMF 인증은 상호인정되는 인증이 JAKIM이 유일한 반면, JAKIM은 42개국 66개 기관에서 인정됩니다.)



- ✓ 말레이시아의 할랄 인증 관련 기관: JAKIM, JAIN, MAIN 등
 JAKIM: Department of Islamic Development Malaysia
 JAIN: Department of State Religious Affairs
 MAIN: State Islamic Religious Council
- ✓ 할랄인증기관: JAKIM <http://www.islam.gov.my> (말레이어/영어)
 Tel: ++60 (3) 8886-4000 / Fax: ++60 (3) 8889-2039
 Email: webmaster@islam.gov.my
- ✓ JAKIM 할랄 인증 신청 페이지: <http://www.halal.gov.my>

- 신청 주체는 말레이시아 법인이어야 함 (회사 등록 번호가 있어야 이용 가능)
- 신청 시 제출 서류:
 - ① 회사 소개서
 - ② 업체/업무 등록 사항(registration)
 - ③ 할랄 인증을 위한 제품/메뉴의 명칭 및 설명
 - ④ 사용 성분 (물을 포함한 제품의 원재료 목록)
 - ⑤ 제조업체/성분 공급업체의 명칭 및 주소
 - ⑥ 할랄 인증서가 있는 성분에 대한 할랄 상태 또는 중요 성분에 대한 제품 사양서(해당될 경우)
 - ⑦ 포장 물질(packaging material)의 종류
 - ⑧ 제조 공정 및 절차
 - ⑨ (보유하고 있을 경우) HACCP, ISO, GHP, GMP, TQM 등의 기타 서류
 - ⑩ 업무 부지/공장의 위치안내도
 (신청자는 공장 실사 중에 참고용으로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기 위해 반드시 “할랄 확인 인증서(Halal Confirmation Certificate)” 파일을 생성해야 함)
- 이후 원재료에 대한 할랄 인증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
- 서류 검토를 통해 문제가 없으면 JAKIM에서 수수료 납부 요청
- 수수료가 납부되면 JAKIM은 공장에 대해 실사 시행 (원재료가 신청서에 명기한 방식대로 준비되었는지, 제품 생산공장이 위생 및 안전조건을 충족시키는지, 생산공정이 할랄 인증에 필요한 요구조건을 충족시켰는지 확인)
- 실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JAKIM은 관련 사항 수정을 요청
- 인증을 받은 기업에 기본적으로 서류상의 문제가 없으면 인증 자체는 큰 어려움이 없음
- 소요기간: 식품의 경우, 보통 6~9개월 (화장품의 경우에는 품목별로 상이)
- 비용: 할랄 인증 취득 희망 업체의 규모/종류 및 품목에 따라 상이하며 매년 갱신 신청(신청비) 필요

그 외 자세한 내용은 <http://www.halal.gov.my> (영어) 등을 참고해 주십시오.

* 참고

- KOTRA 해외시장뉴스 > MIHAS 2018로 알아보는 말레이시아 할랄 시장동향 (2018.05.25.)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globalBbsDataView.do?setIdx=245&dataIdx=166448>
- KOTRA 해외시장뉴스 > 말레이시아 'JAKIM 할랄인증' 들여다보기 (2016.04.06.)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globalBbsDataView.do?setIdx=245&dataIdx=149396>

참 고

저희 1381 인증표준콜센터의 해외인증조사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제조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수출활동과 관련이 없는 학술·학술·연구·자료수집 목적의 문의, 해당조사를 통해 수익활동을 하는 사설 컨설팅, 대행기관 등으로부터의 문의는 해당 서비스 대상이 아니므로 대응이 불가능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

규격은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사거나 한국표준정보망 (KSSN)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관련 규격 파악
- 규격 구입: 한국표준정보망(www.kssn.net)

▶ 시험기관 검색

한국인정기구(KOLAS)인정 국내 시험소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에서는 특정 기관이 수행하는 시험/교정 등의 세부 항목에 대해 인정하고 해당 분야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각 시험기관의 적격성을 인정하며, 공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합니다. (즉, 특정 규격/시험에 대해 KOLAS 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이 KOLAS 시험기관입니다.)

- 한국인정기구 KOLAS > 시험기관검색
<https://www.knab.go.kr/usr/inf/srh/InfoTestInsttSearchList.do>

비 KOLAS 기관

위의 KOLAS 기관이 아니어도 시험이 가능한 기관은 많으며, 미국 수출이 목적이라면 미국계 시험기관이나 미국 내 시험기관 또는 글로벌 시험인증기관 등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제인증기관 한국 지사

그 외에 품목별로 시험이 안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진출해 있는 국제인증기관으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소재한 대표적인 인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만 기재)

- Bureau Veritas / 02-555-8922 / www.bureauveritas.co.kr
- Intertek / 02-567-7474 / <http://www.intertek.co.kr>
- SGS / 02-709-4652 / <http://www.sgsgroup.kr/>

- TUV-SUD / 02-3215-1100 / www.tuv-sud.kr
- TUV Rheinland / 02-860-9860 / <https://www.tuv.com/korea/ko/>
- Nemko / 031-330-1700 / <https://www.nemko.com/ko>
- 기타

※ **업무대행기관**

상세 실무(비용, 소요기간)와 관련된 문의는 업무를 대행하는 인증기관 및 컨설팅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대행기관들은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기관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컨설팅기관검색
<https://www.smes.go.kr/globalcerti/info/concList.do?key=9093>

문 의 처

위 내용은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검색한 결과로써 최신 현지 정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말레이시아 현지의 수입업체 또는 현지 KOTRA 무역관 등을 통해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 1381인증표준콜센터에는 해당 현지 언어(말레이어) 지원 인력이 없어 문의하신 건에 대해 더 이상의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http://www.kotra.or.kr/KBC/kualalumpur/KTMIUI010M.html>
TEL: ++60 (3) 2117-7100 / FAX: ++60 (3) 2142-2107

- KOTRA 홈페이지의 문의/상담 메뉴를 통해 상세 내용에 대해 글로벌지역전문가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글로벌지역전문가의 답변이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답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이용 방법: KOTRA 홈페이지(회원 가입 필요) ⇒ '문의·상담' 메뉴 ⇒ 전화, 챗봇, 온라인 상담 선택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6014>

- 한국무역협회 Trade Pro 무역애로상담 및 무역현장컨설팅 1566-5114
<https://membership.kita.net/coc/problem/serviceInformation.do>

지원 사업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중소기업의 경우, 국내 유관기관의 각종 해외인증비용 지원 사업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mes.go.kr/exportcenter/>

- 2025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103330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https://www.smes.go.kr/globalcertification/main.do>

: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트랙 1차 / 패스트트랙(2월~8월) 참여기업 모집공고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패스트트랙(상시모집)'과 '일반트랙(연 3회 모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부터 별도로 공고

<https://www.smes.go.kr/globalcertification/info/ktrInfo.do?key=9093>

- 사업명 :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전년도 직접 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1 일반트랙 1차 (230개사 내외, *모집 규모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541개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50% ~ 70% 지원

*지원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인증도 '비공공 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 내 지원(일반-패스트트랙 합산)

지원건수	기업당 지원한도	지원비율(전년도 매출액 기준)			인증분야별 개별한도
		100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최대 4건	연간 1억원	70%	60%	50%	*공고 참조

*최대건수(4건, 일반-패스트트랙 합산)를 신청했음에도 신청금액((예상)협약금액) 합이

3,500만원 미만일 경우, 3,500만원 한도 내에서 4건을 초과하여 지원건수 제한 없이 추가 신청 가능

- 일반트랙 1차 모집 기간 : 25년 2월 24일(월) 09:00 ~ 3월 28일(금) 18:00까지

- 대상 인증 : 국가별 일반트랙 해외규격 인증 지원 대상(*공고 참조)

*공고 : <https://www.smes.go.kr/globalcertification/info/ktrInfo.do?key=9093>

2 패스트트랙 (연간 500개사 내외, 상시모집, *모집 규모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8개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50%~70% 지원

<패스트트랙 지원대상 인증 (8종)>

미국	FCC(전기전자)	FDA(의료기기 class 1)	FDA(화장품 등록)
유럽	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CPNP(화장품)
국제	HALAL(식품, 화장품)		IECEE(전기전자)
일본	PSE(전기전자)		

단, 위 인증에 해당하더라도 고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건당 3,000만원 이상 소요), 일반트랙(고비용인증)으로 신청

* 상기 인증(8종)이 아닌 해외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일반트랙”으로 신청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 내 지원(일반-패스트트랙 합산)

지원건수	기업당 지원한도	지원비율(전년도 매출액 기준)			인증분야별 개별한도
		100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최대 4건	연간 1억원	70%	60%	50%	*공고 참조

*최대건수(4건, 일반-패스트트랙 합산)를 신청했음에도 신청금액((예상)협약금액) 합이 3,500만원 미만일 경우, 3,500만원 한도 내에서 4건을 초과하여 지원 건수 제한 없이 추가 신청 가능

▶ 인증을 획득한 참여기업의 실제 인증획득 소요 비용에 지원비율을 적용한 금액과 “패스트트랙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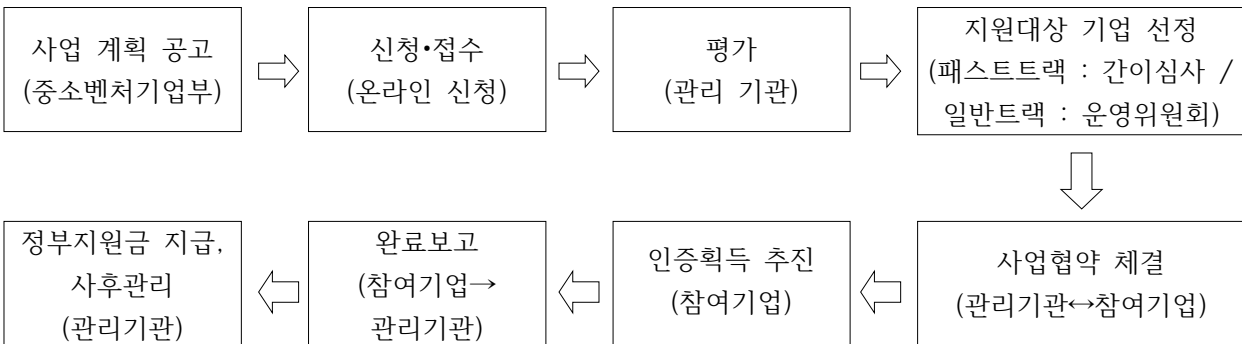
- 패스트트랙 모집 기간 : 25년 2월 24일(월) 09:00 ~ 8월 29일(금) 18:00까지(상시모집)

*예산 조기 소진 시 모집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https://www.smes.go.kr/globalcerti> → 회원가입 → 로그인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 [패스트트랙/일반트랙] 구분 신청

- 평가·선정 및 지원 등



▶ 문의처

관리기관	전화번호	FAX	주소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02)2164-0173~8	02)507-8118	(13810) 경기 과천시 교육원로 98, 본관동 303호 (수출인증지원센터)

※ 각 시도별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프로그램도 있으니 해당 지역의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마당 비즈인포 > 지원사업 공고 > 수출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list.do>

- 기업마당 비즈인포 > [충남] 2025년 수출입보험료 및 바이어 신용조사 지원 사업 공고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105277

- 기업마당 비즈인포 > [경기] 2025년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105204

※ 해외조달정보 관련 문의

- 해외조달정보센터

<https://globalkoreamarket.go.kr:8843/gpass/index.do>

- 해외조달정보센터 > 해외조달정보 > 해외입찰정보

<https://globalkoreamarket.go.kr:8843/bbs/selectBoardList.do?boardId=GPASS004>

※ 주의 !

1381인증표준콜센터는 해외원문문서의 번역 서비스를 하지 않으며, 간혹 경우에 따라 일부 내용을 번역할 경우에도 그 번역의 완전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서 번역은 업체의 몫입니다. 상기 안내 사항은 각 항목 하단에 링크된 참고와 출처 페이지의 일부 내용을 발췌, 번역한 것으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아래의 자료 참고, 출처 링크에서 원문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자료는 온라인 정보에 근거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귀사에서 본 자료를 활용할 시 정확한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및 소요기간은 귀사제품에 적용되는 시험항목, 시험기관, 귀사의 관련서류제출 및 대응 속도에 따라 변수가 있는 사안이므로 해당 인증을 진행하는 인증기관/시험기관의 실무자와 협의하여야합니다.

귀사 제품의 사양과 함께 해당 인증기관에 컨택하여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닌 단순 참고자료이므로 각종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효력이 없습니다. 1381콜센터에서 제공한 정보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우리 센터에 즉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자료는 무단 수정/배포 불가합니다.